보도자료

고용부, 8.3.부터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는 **8.3.부터 8.31.까지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각계각층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 올해에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 특히,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해외진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개요 >

① **포상대상**: 개인(사업주, 노동자,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단체(기업, 공공기관,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고용노동관계법, 공정거래관련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

② **포상규모**: 178점(훈장 6, 포장 8, 대통령표창 37, 총리표창 37, 장관표창 90)
다만,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분야별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적 조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분야별 접수기관>
① 일자리창출지원, 장년고용촉진 부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지역협력부서)
② 청년해외진출 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③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지방고용노동청·지청(공공부문 비정규직업무 담당부서)

○ **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일자리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 누리집(www.moel.go.kr)의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에서 추천, 접수기간(2020.8.3~8.31)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추천 시 반영

□ 신청 및 추천 접수 이후에 **공개검증(10월)**과 **공적심사(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12월**에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절차]

- 포상신청서 접수 (2020.8.3.~8.31)
- 1차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9월)
-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유 조회 및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10월)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
- 정부포상 수여 (~12월)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그동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묵묵히 기여해 온 유공자를 찾아 그 공적을 널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혜영 주무관(☎044-202-72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

1. 포상개요

1 기본방향

○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

- 특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생활 균형의 모범적 실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데 **공이 큰 유공자 포상**

2 포상대상

① **개인**

○ 민간기업종사자, 공공부문.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나누어 포상

② **단체**

○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포상

3 포상신청·추천

①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

* 지역협력부서(팀), 공공부문 비정규직업무 담당부서(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 / 해외취업기획부

② **국민추천***을 통해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운영

4 포상규모(안)

○ 178점(훈장 6, 포장 8, 대통령표창 37, 총리표창 37, 장관표창 90)

- 다만,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2.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1 개 인

▢ 최소 수공기간

○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내 용
민간기업종사자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종사자
공공부문종사자	·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자치단체·공사·공단·공기업 등)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자	·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장년 고용촉진 등 공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공무원	·일자리 창출·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

2 단체

▢ 최소 수공기간

○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내 용
민 간 기 업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공 공 부 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자치단체·공사·공단·공기업 등)
취 업 지 원 기 관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일자리 창출지원,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3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구분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대상
추천제한 대상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포상금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상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0. 8. 3.(월)~2020. 8. 31.(월)

○ 접수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창출지원·장년고용촉진 부문: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개선지도과

* “일자리 창출지원 부문”의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학교수 및 연구자는 고용노동부 본부 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공무원노사관계과에 각각 문의·접수(추천)

* 청년해외진출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2 국민추천

○ 추천기간: 2020. 8. 3.(월)~2020. 8. 31.(월)

○ 접수처:

- (인터넷)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참조

- (우편)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일자리정책평가과)로 송부(~8.31)

4. 세부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 포상계획 안내·홍보	8월	고용부(본부,청·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포상신청(추천)서 접수	8월	고용부(청·지청) 산업인력공단(본부) 「고용노동분야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9월	고용부(청·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 고용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9월	청·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고용부(본부)
▪ 각종 조회 및 결과확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산재관련 명단공표 여부 조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회 ·임금체불 명단공개 여부 조회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여부 조회 ·포상경력 조회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10월	고용노동부(본부) ·경찰청(범죄분석담당관실) ·공정위(심판총괄담당관실) ·행안부(상훈담당관실) ·국세청(징세과), ·관세청(세원심사과), ·행안부(지방세특례제도과) ·고용부(산재예방정책과) ·고용부(근로기준정책과) ·고용부(장애인고용과)
▪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10월	고용노동부(본부) ·15일 이상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적정리 및 심사·평가 등 후보자 선정)	10월	고용노동부(본부) ·민간위원 50% 이상
▪ 포상대상자 행안부 추천	11월	고용노동부(본부)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 포상 실시	12월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 –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 ▵ (월 환산액 병기) 6.25.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 (업종별 구분) 6.29.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 ▵ (최저임금 수준) 7.14. 찬성 9표, 반대 5표로 `시간급 8,720원` 가결

○ 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 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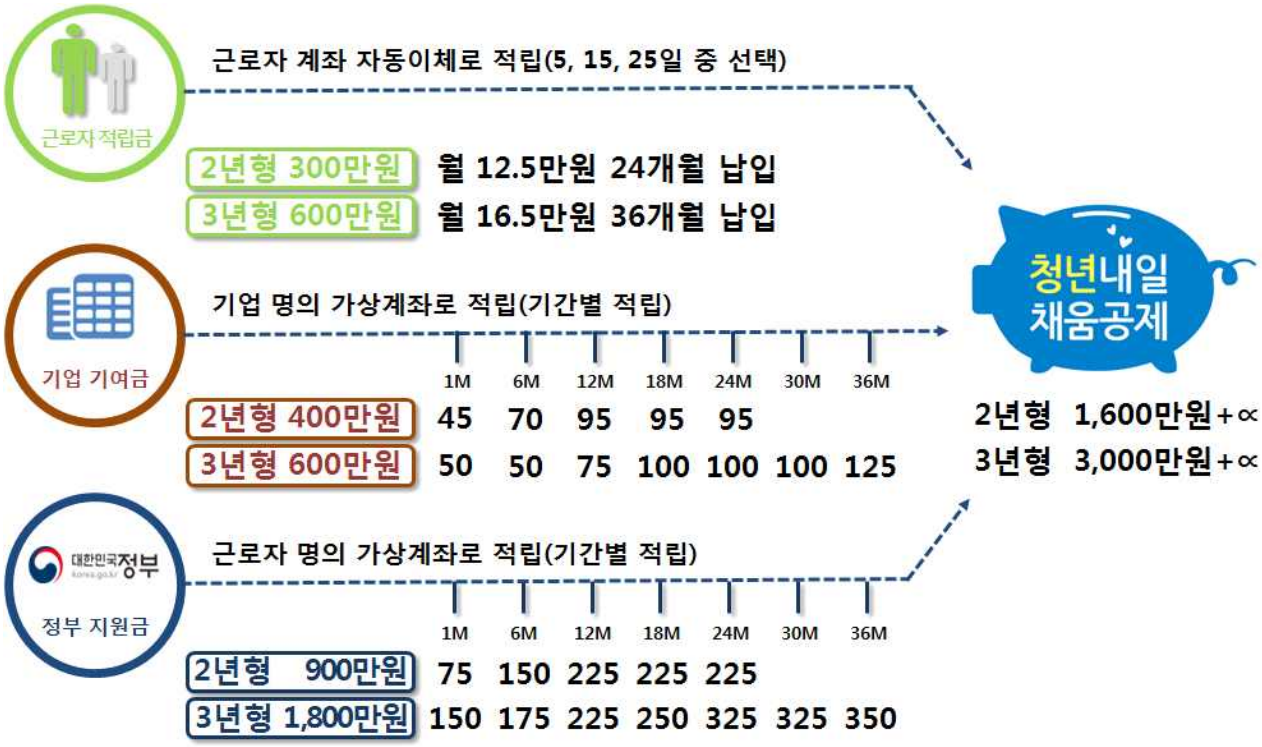

나부터 지켜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6925-5830)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나부터 지켜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1	고용창출장려금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① 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 워라밸일자리장려금 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3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2-2171-1800~5)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2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사업주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별 신청), 최대 2년간 지원**

나부터 지켜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